『젠더와 문화』 제9권 2호(2016), pp. 49-84

연구논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권인숙** · 이건정*** · 김선영****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성폭력통념과 관련된 연구나 교육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성폭력 피해 통념극복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나 치유, 피해자 지지적인 사회의식형성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 형성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235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조사처리는 기술통계분석, 집단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강간통념척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통념항목을 만들어 피해유형별 차이와 피해자들의 원망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들은 기존의 강간통념뿐만 아니라 피해통념 경험을 지각한 경우가 대체로 높았다. 피해통념경험이 높은 경우 주변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원망경험도 높았다. 또한 강간통념의 주요내용을 구성하는 삽입경험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통념경험에 차이를 만들지 못하여 강간통념이란 용어사용이나 척도 구성에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형성케 한다.

주제어: 피해통념, 강간통념, 성폭력통념, 2차 피해, 피해자

---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2A03045152). 이 연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과 함께 진행하였다.

** 주저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ikwon@mju.ac.kr)

***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gunjeong@ewha.ac.kr)

**** 공동저자, 하와이대학교(Hilo) 심리학과 부교수(sk47@hawaii.edu)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 http://dx.doi.org/10.20992/gc.2016.12.9.2.49

1. 서문

여성이 주피해자인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은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가부장적인 젠더 관념과 문화와 긴밀히 결합된 성과 성폭력에 대한 편파적이고, 고정관념화된 잘못된 신념이며, 성폭력의 지속적인 발생이나 피해자 비난에 영향이 크다(Burt, 1980; Lonsway and Fitzgerald, 1994; Payne, Lonsway, and Fitzgerald, 1999). 따라서 여러 나라의 반성폭력 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도 성폭력 통념의 극복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반성폭력 운동주체들이 극복하려한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 발생과 관련된 통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1] 가해자를 극단적인 괴물로만 한정하고,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 가해동기를 본능이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성폭력 발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비난하는 논리들이 주요 통념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이 통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어있다.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를 평가하는 가치와, 그와 관련된 반응에 담겨있는 통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에 대한 과도하거나 획일화된 규정 혹은 피해자가 피해를 가장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불신하는 의식이 극복해야할 통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전연구로서 진행된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를 검토하고 29명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심층면접 등을 통해서 확인했던 피해자들이 느끼거

---

1)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정리한 성폭력통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②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③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④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⑥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⑦ 침묵은 사실상 동의 아닌가. ⑧ 밤늦게 까지 술 먹은 것은 동의 아닌가. ⑨ 단 한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⑩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⑪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⑫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나 주변반응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에 대한 통념적 의식은 사건원인제공에 대한 피해자 비난을 넘어서 다양하고, 그 영향력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식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1. 기존의 강간통념에서 확인되었던 피해에 대한 불인정이나 비난, 2.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등의 순결주의, 혹은 상품적 가치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치평가, 3.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와 같은 피해에 대한 일방적이면서 과도한, 낙인적인 판단 등이다.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공동체에서의 반응과 형사,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피해통념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런 피해통념은 가해자와의 관계성이나 발생의 맥락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는 사건자체, 혹은 사건의 발생 등에 대한 판단과 감정, 사건의 심리적, 물리적 영향, 주변의 반응, 사건화 후 각종 형사법적 과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통념에 따라 달라진다. 캠벨 · 드워킨 · 캐브럴(Campbell · Dworkin · Cabral, 2009)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인적 특성(individual), 사건 특성(incident), 가족/주변 반응(micro), 경찰, 병원, 상담소(meso), 사회적 통념/분위기(macro), 재피해/다중피해(chrono/생애사)로 나누었다. 김민정은 "성폭력 피해란 특정 사건으로 인한 하나의 피해가 아닌, 이 모든 메카니즘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재구성되는 다층적 피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리하고 있다(2015: 175). 학계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후유증, 사건적 맥락을 통한 원인결과 분석에 치중했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구성에 사회적 반응이나 문화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Ullman, 2010; Wasco, 200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사람, 기관 관계자의 반응과 사회, 문화적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폭력 통념이다. 특히 2차 피해와

관련 성폭력 통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차 피해는 형사법절차상에서 2차적으로 겪는 불이익과 고통에 더하여서 원인제공이나 결과에 대한 피해자 비난과, 범죄에 대한 주변과 사회의 가치관과 통념에 의한 판단, 평가, 반응과 행동이 초래하는 피해를 의미한다(허선주 · 조은경, 2012; Campbell and Raja, 2005). 반성폭력 활동가, 학자, 정책입안자들은 성폭력을 2차 피해가 가장 심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현실을 점검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왔다.

그러나 피해 통념은 주목받지 못했고 2차 피해를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관한 사회의식은 극복해야 할 통념이라기보다는 성폭력문제가 중요함을 알리는 도구로서 주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어왔다. 성폭력이란 개념조차도 없던 사회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는 성폭력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성폭력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피해자가 (여성이) 유발했다는 '피해자유발론'에 대한 통념과 신화가 강하다.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도 강간죄 구성에서 여성의 저항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최협의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서 여성이 유발하지도 않았고 당하기를 원치도 않았으며 저항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려다보니 여성의 소극성과 피해의 양을 강조하는 '피해자화'를 극복하기 힘들었다(이미경, 2007).

둘째는 성폭력 통념의 연구가 주로 강간통념에 한정되어서 진행되어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강간통념은 특정의 행위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좀 더 명확한 상황을 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간통념은 이름부터가 삽입을 중심으로 한 행위여부를 논하는데 초점이 가있어 발생에 대한 피해자 비난에 한정된 문제의식을 동반하고,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징을 살피기 쉽지 않았다. 성폭력통념이라고 하더라도 강간통념에서 사용하는 척도를 기본적으로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2차 피해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현실과 내용성을 통념으로 담아내기에는 개념적으로 제한성이 컸다.

이 연구는 성폭력 발생에서 가해자의 괴물화, 혹은 가해자옹호와 피해자비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성폭력 통념에 더하여 2차 피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성폭력 피해통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성폭력 피해 통념극복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와 치유, 피해자 지지적인 사회의식형성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 형성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성폭력피해통념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성폭력 유형차이에 따라 피해통념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의미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와 함께 강간통념의 개념적 한계도 점검하려고 한다.

2. 배경이 되는 연구동향

1) 성폭력 통념에 대한 연구

강간통념은 1970년대, 사회학자와 브라운밀러(Brownmiller)와 같은 여성학자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을 지속하게 하고 사회가 용인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문화적 신념체계로서 최초로 소개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정리는 버트(Burt, 1980)와 론즈웨이 · 피츠제랄드(Lonsway and Fitzgerald, 1994)에 의한 것이다. 버트는 강간통념을 "강간과, 강간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편향적이고, 틀에 박히거나 혹은 잘못된 신념"(1980: 219)이라고 규정하였다. 론즈웨이 · 피츠제랄드(1994)는 강간 통념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틀리거나 잘못된 신념이며 중요한 문화현상을 설명하고 있고,

존재하는 문화적 합의나 배치들을 합리화한다고 그 역할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강간통념이란 용어와 관련 한국은 연구진들과 운동진영의 용어사용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강간통념이란 용어를 주로 쓰고(이석재, 1999; 박경, 2008) 일부학자는 성폭력통념과 섞어 쓰기도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강간통념의 틀을 사용한다(김재엽 · 최지현, 2009; 최인숙 · 김정인, 2015). 반면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는 성폭력통념이라는 용어를 운동초기부터 사용하였는데 강간에만 초점을 맞춘 성폭력은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성기 중심적, 남성행위중심적인 정의"(한국성폭력상담소, 2016)라는 비판적인 관점이 서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모든 성적인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여 왔고, 강간보다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대표용어로 사용하고 성폭력통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강간통념의 연구는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강간 발생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집단 간 차이나 발생 원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집단 간 차이 중 성별의 차이는 초기에는 성별차이가 크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있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Vonderhaar and Carmody, 2015). 강간통념이 높은 경우 피해자 비난도 높다는 등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Kopper, 1996),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강간통념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Baugher et al., 2015),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 차별적인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이 높은 강간통념을 가진다는 연구(Aosved and Long, 2006), 강간 통념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험을 강간으로 규정짓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Peterson and Muehlenhard, 2004) 등이 미국 등에서 진행된 연구들이다.

한국의 경우 강간통념의 연구는 미국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석

재 · 최상진(2001)은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을 대상일수록 성폭행 사례를 강간통념에 부합하여 이해하고,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박경(2008)의 한국의 대학생연구에서도 강간통념이 성적인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인숙 · 김정인(2015)은 대인폭력 수용과 반여성주의의 상관성을 보이는 연구를 하였다. 이명신(2014)은 강간통념과 성적괴롭힘의 관계를 남녀학생의 성별차이와 함께 규명해냈다.

김재엽 · 최지현(2009)은 청소년 여학생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경험 자체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왜곡된 성통념이 매개되어서 자기비난이 높아지면서 우울이 형성되는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이는 성통념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로서 흥미롭다.

발생 원인에 주로 초점이 가있는 강간통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념내용은 피해와 관련한 통념이다. 성폭력 피해통념은 주로 남성의 성폭력피해에서 용어는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반성폭력 대응단체 중[2]일부는 남성성폭력 피해통념(male victimization myth)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거나, 피해 중에 즐긴다거나, 여성이나 소녀보다 피해가 적다는 등에 대한 통념극복을 목표로 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강간통념이라는 개념에 피해에 관한 통념이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강간의 피해는 장기적인 문제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사소하게 여기는 의식에 대한 부분이다.[3] 패인 · 론즈웨이 · 피츠제랄드

2) Sexual Assault Crisis Team, http://sactvt.org/myths-about-male-sexual-victimization-2. Victim Service라는 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을 통념으로 다루고 있다. http://www.victimservices.com/2015/08/05/male-sexual-victimization-myths-and-facts(검색일: 2016.3.30).

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Rape trauma syndrome is a transient problem. Most healthy people will return to a normal state of functioning within a year", List of Rape Myths, Sociology of Rape,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http://www.d.umn.edu/cla/faculty/jhamlin/3925/myths.html. "Unless she is physically harmed, a woman who has been sexually assaulted will not suffer any long-term

(Payne, Lonsway, and Fitzgerald, 1999)도 대표적인 통념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성폭력 피해의 의식과는 다른 결에서 형성되어있다.

강간통념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강간통념 척도를 보면 한국과 미국에서 비슷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버트(1980)는 '여성은 강간을 원한다', '사실은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성은 성욕은 통제하기 힘들다', '술을 먹거나 차를 얻어 타면 강간의 빌미를 제공한 거다'라는 기본 항목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문항을 만들어 척도를 개발했다. 이 틀은 기본적으로 이어져 일리노이(Illinois) 강간 통념 수용척도를 보더라도 문항이 더 많아졌지만(45개)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Ullman, 2010). 이석재(1999)는 '끼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걷는다',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등의 새로운 항목을 넣었지만 기본적으로 버트와 비슷한 구성으로 대인간 폭력수용, 성역할고정관념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재협 · 최지현(2009)이나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에서도 조금 줄인 항목이지만 비슷한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폭력통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의 통념조사는 대부분 강간상황과 연결되어 척도가 개발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삽입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이 통념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개인들의 피해증상 혹은 피해 후유증에 초점을 맞추어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과중한가를 밝히고 있다(김미리혜, 2011; 신기숙, 2011). 이런 관점의 연구는 아동성폭력 피해연구에서

---

effects", Rape Crisis Centre, http://www.wavaw.ca(검색일: 2016.3.28).

많이 확인되는데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성폭력 경험이 인성, 정서적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사회의 관심이나 책임이 큰 영역이기 때문이다(정국, 2012; Krienert and Walsh, 2011).

최근 과중한 피해증상이나 후유증 중심의 연구에서 다른 방향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는 치유의 가능성과 의미를 살피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권혜수(2007)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치유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생존자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삶을 재구성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공춘옥 · 김봉환(2014)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피해증상이나 후유증을 중심으로 한 피해연구가 성폭력경험을 한 번의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성폭력의 피해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피해연구를 확장하거나 다른 여러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상황의 특이성, 가해자와의 관계성, 피해의 정도, 삽입여부 등 당시의 상황과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Ullman et al., 2006). 그러나 성폭력은 다른 어떤 폭력 경험보다 피해당시의 상황이나 경험이 피해형성의 대부분을 결정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피해자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규정 혹은 해석, 자기비난, 피해 경험에 대한 주변이나 사회의 반응 등이 피해경험의 특수성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다(Campbell · Dworkin · Cabral, 2009; Moor, 2007). 울만(Ullman, 2010)은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성폭력사건 전이나 성폭력사건의 특징보다 성폭력의 후유증이 커지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는 사회지지 부족이나(Andrews · Brewin · Rose, 2003) 부정적 사회적 반응(Ullman and Filipas, 2001), 혹은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갈등이 여성의 후유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연구들과 결이 같다. 와스코도 전통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관점이 너무 협소하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간피해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낙인은 이미 추락하는 경험을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다”(Wasco, 2003: 316)며, 사회적 반응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가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2차 피해에 대한 연구

2차 피해의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수사의지 결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그리고 대법원이 취하는 강간죄에 관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등으로 인한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낳은 피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이미경, 2011). 국내외의 2차 피해연구 동향을 정리한 허선주 · 조은경(2012)은 2차 피해의 연구에서 영역의 확대와 경험적 연구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레넥 · 스벤슨(Renck and Svensson, 1997)은 공격의 범위나 가해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전 삶의 상황과 함께 주변사람들이나 지원자들 사회기관 종사자들에 의해 2차 피해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를 하였다. 켐벨 · 라자(Campbell and Raja, 2005)는 병원이나 상담기관 등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자들의 태도도 2차 피해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명신 외(2015)는 상담사와 경찰관등의 연계에 관해 2차 피해태도, 공정성, 다전문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중 통념이 포함된 2차 피해의 연구는 많지 않으나 주로 기존의 강간통념의 전제나 틀을 이용하고 있다. 2차 피해의 초기적 연구에 해당하는 정현미(2000)의 연구는 강간통념 중 여자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불인정이나 피해자 비난이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장미정 · 조은경(2004)은 콜린(Colleen, 1988)의 강간통념척도를 번역하여 이용, 경찰관등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관관

계가 높고, 조사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이명신 · 양난미(2012)는 남성경찰관의 2차 피해적인 태도를 점검하기 위한 문항개발에서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태도나 면식, 비면식 성폭력에 대한 태도 차이를 통해 피해자 비난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다. 이는 기존의 강간중심으로 형성된 통념척도의 한계를 극복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2차 피해의 연구에서 강간통념외에 관찰자들이 자주 쓰는 통념은 공정한 세상신념이론(Just world theory)으로서 세상은 공정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받을만하니까 받았다고 믿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에 대한 연구이다(Correia · Vala · Aguiar, 2007). 이와 같이 강간통념의 기존의 틀에 한정되지 않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통념을 각 사회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문제

(1)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통념 경험 정도와 유형별 차이 여부를 확인해 본다.

(2) 성폭력 피해통념의 원망등과 같은 2차 피해적인 요소와의 관계를 확인해본다.

3. 연구방법

1) 참여대상자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도움과 포스터/온라인광고,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총 235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10대가 20명(8.9%), 20대가 117명(52.0%), 30대 56명(24.9%), 40대 24명(10.7%), 50대 이상 8명(3.6%)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상담소 연계로 설문에 참여한 경우가 155명(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소개 50명(21.5%), 포스터/온라인 광고를 보고 참여한 경우가 27명(11.6%)이었다.

2) 사전연구: 상담일지 정리와 피해자 면접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일지와 29명의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서 변인관련문항을 추출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사례들 중 '인터넷 상담', 즉 이메일과 게시판 게재 형식으로 접수된 것들만을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접수를 제한하게 되는데, 때문에 사례가 풍부한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친 자료 중 아동 성폭력(친족 성폭력 포함, 피해자 연령 만13세 미만)과 비면식 강간(미수 포함), 직장 및 학내 성희롱(성추행 포함, 강간/미수 제외), 데이트 성폭력과 채팅, 준강간(미수 포함)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총 389건(이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한 사례는 347건)의 사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3) 주요변인구성

(1) 성폭력 강간통념, 피해 통념의 지각 경험

사전연구에서 주요한 피해통념을 문항화하고, 기존의 강간통념문항에서 피해자의 불인정이나 비난논리에 적합한 것들을 채용하였다. 버트(1980)의 강간 통념 수용 척도에서, 이석재(1999)가 수정, 보완한 척도와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표 1〉(이 논문의 64쪽)의 1번 통념부터 12번 통념에서 이석재의 척도에서는 통념 3, 5, 9를 여성가족부의 척도에서는 통념 1, 2, 4, 6, 7, 8, 12를 채용 약간 변형하였다. 통념 10과 11은 피해불인정과 관련해서 상담일지 등을 이용하여 새로 개발하였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기존의 강간통념과 연결고리가 높아 분석에서는 강간통념으로 구분하였다. 13번 통념부터 20번 통념까지는 상담일지와 피해자 면접을 이용하여 순결주의, 혹은 상품적 가치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치평가나 피해에 대한 일방적이면서 과도한 판단 등에 대한 새 문항을 만들어 혼합하여 배치하였다. 13번부터 20번 통념이 적극적인 의미의 성폭력 피해통념에 해당한다고 구분했다. 성폭력 강간통념, 피해통념의 지각 경험은 주변사람들이 문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응답자를 대한다고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을 가부를 묻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 사건 유형별 변인

사건 변인은 피해자가 경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으로 조사과정이나 판결, 주변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기준이 된다(김민정, 2015). 이 연구에서는 복수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가장 힘들었던 피해경험을 고르게 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피해유형을 나누었다. 피해유형을 가해자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친족, 비면식, 데이트, 공동체 네 가지로 나누었다. 친족(51명), 비면식(33명), 데이트(36명), 공동체(50명)이다. 공동체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겪은 성폭력의 명칭으로 규정하였고, 따로 분류한 이유는 공동체의 집단주의적 사고나 행동이 2차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피해방식으로 삽입과 비삽입을 나누었고,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준강간 여부도 피해방식의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간음이나 추행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준강간은 주로 술 먹고 의식불명상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데이트 폭력이나 공동체 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다. 상담일지상에도 가장 피해자 비난이 높은 피해방식이어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기 삽입은 총 92명이 경험하였고, 준강간은 57명이 해당되었다.

(3) 주변반응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원망정도

성폭력 피해에서 주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2차 피해의 구성요소를 살피고 원망의 대상을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으로 확대하여 한 대상만 고르게 하였다. 한 대상만 고르게 한 이유는 주로 원망이 집중되는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거라 판단해서였다. 원망의 내용은 상담일지나 면접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의견을 통해 존중하지 않는 것, 피해자비난, 피해사실 무시, 망가진 존재로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4) 피해자들의 성폭력의 특이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 통념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상의 영향력 혹은 동의정도를 확인하려 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피해가 다른(범죄) 피해와 다른 점이 있는가를 물으면서 임신, 성병 등의 육체적 결과와 함께 순결, 인생망침, 비난, 증명의 어려움, 수치 등 상담일지 상에 많이 나타난 피해자들이 서사 속에 담겨있던 피해요소를 섞어 8가지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였다.

4. 결과

1) 성폭력 피해통념의 경험 지각정도

성폭력 피해통념의 경험 지각의 통념별 차이를 〈표 1〉을 통해 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경험한 것은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봐야 이로울 것이 없다'가 61.9%이고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가 53.7%로 두 번째 높은 항목이다. 위의 두 가지를 포함 피해통념 항목으로 새롭게 배치한 항목은 통념 13부터 20인데 대체로 경험지각률이 높았다. '씻을 수 없는 상처'는 48.6%,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는 47.7%이다. 가장 낮은 것은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28.0%),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26.1%), '연애나 결혼을 하기 어려울것'(25.7%)이다.

피해자비난이나 피해불인정과 관련되어 배치된 항목을 점검해보면 40% 대의 높은 지각률을 보인 항목은 '만만하게 보여서'(49.1%)이다. 피해자의 평소행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책임을 묻는 비난적 요소가 큰 내용이다. 다음에는 30%대로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36.7%) '모텔이나 집안에 함께 들어간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의사표시'(33.5%) 등이다. 이중 기존의 강간통념척도의 피해자 비난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 1부터 항목 12까지를 지각한 비율은 평균 30.4%이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가치평가를 지각한 경험으로 새로 구성된 항목 13부터 20까지는 평균 47%로 후자의 경험지각 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강간통념과 피해통념의 20개 문항 간 Cronbach α는 .852이다.

〈표 1〉 지각했던 성폭력 강간통념과 피해 통념

	긍정한 수	케이스 퍼센트
1.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다.	79	36.2%
2.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69	31.7%
3. 성폭력을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58	26.6%
4. 네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한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51	23.4%
5. 네가 모텔이나 집안에 함께 들어간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의사표시이다.	73	33.5%
6. 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68	31.2%
7.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107	49.1%
8. 너도 사실 그 당시에는 즐겼을 수도 있다.	48	22.0%
9.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38	17.4%
10. 네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80	36.7%
11.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47	21.6%
12. 여자들은 상대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폭력 신고를 하기도 한다.	25	11.5%
13.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61	28.0%
14.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106	48.6%
15.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104	47.7%
16.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57	26.1%
17.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56	25.7%
18. 여러 성폭력 중 성기 삽입의 강간이 가장 심각한 피해이다.	82	37.6%
19. 네가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135	61.9%
20. 너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17	53.7%

2) 피해유형별 통념경험의 차이

피해유형별 통념경험의 차이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만을

보자면(〈표 2〉 참조), 기존의 강간통념척도의 피해자 비난 영역에 속할 수 있는 '술 때문이라면 피해자 책임', 또는 '네가 만만해 보여서' 등의 경우, 공동체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가 더 많이 경험했다. 새로 첨가한 피해통념 항목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것은 인생 망친 것',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 것' 등의 부정적 규정은 친족 성폭력피해자가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결과가 나왔다. 통념경험에서 비면식은 '만만해 보여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항목에서 다른 피해유형보다 가장 낮았다.

〈표 2〉 피해유형별 통념경험

		친족	비면식	데이트	공동체	
1. 성욕 통제 못한 실수	그렇다	17(33.3%)	12(41.4%)	12(34.3%)	22(44.0%)	1.576
2. 네가 저항 안 해서	그렇다	19(37.3%)	7(24.1%)	11(31.4%)	15(30.0%)	1.563
3. 네가 유혹	그렇다	11(21.6%)	6(20.7%)	14(40.0%)	16(32.0%)	4.644
4. 키스, 애무 허용 때문에	그렇다	8(15.7%)	4(13.8%)	12(34.3%)	14(28.0%)	6.146
5. 모텔 간 것은 성관계 허용	그렇다	14(27.5%)	4(13.8%)	14(40.0%)	19(38.0%)	6.796
6. 술에 취한 것은 너도 책임	그렇다	9(17.6%)	7(24.1%)	15(42.9%)	23(46.0%)	11.872**
7. 만만해 보여서	그렇다	19(37.3%)	9(31.0%)	21(60.0%)	32(64.0%)	12.756**
8. 너도 즐겼을 것	그렇다	12(23.5%)	2(6.9%)	12(34.3%)	12(24.0%)	6.793
9. 네가 성관계 난잡해서	그렇다	8(15.7%)	2(6.9%)	7(20.0%)	10(20.0%)	2.737
10. 피해를 확대	그렇다	22(43.1%)	7(24.1%)	16(45.7%)	21(42.0%)	3.809
11. 가해자 진심 오해	그렇다	13(25.5%)	3(10.3%)	8(22.9%)	15(30.0%)	4.069
12. 보복심 때문에 거짓 신고	그렇다	5(9.8%)	2(6.9%)	3(8.6%)	10(20.0%)	4.328
13. 더럽혀진 몸	그렇다	18(35.3%)	6(20.7%)	13(37.1%)	8(16.0%)	7.210
14.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렇다	30(58.8%)	15(51.7%)	13(37.1%)	26(52.0%)	3.964
15.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	그렇다	28(54.9%)	12(41.4%)	11(31.4%)	28(56.0%)	6.616
16. 인생 망친 것	그렇다	15(29.4%)	6(20.7%)	9(25.7%)	13(26.0%)	.734
17.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그렇다	18(35.3%)	4(13.8%)	12(34.3%)	8(16.0%)	8.474*
18. 삽입의 강간이 가장 심각한 피해	그렇다	15(29.4%)	12(41.4%)	10(28.6%)	24(48.0%)	5.162
19. 피해사실 알리면 불이익	그렇다	34(66.7%)	15(51.7%)	22(62.9%)	31(62.0%)	1.777
20. 피해 공개는 부끄러운 일	그렇다	28(54.9%)	15(51.7%)	19(54.3%)	28(56.0%)	.139
전체		51(30.9%)	29(17.6%)	35(21.2%)	50(30.3%)	

* p〈 .05, ** p 〈 .01, *** p 〈 .001

준강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통념경험을 나누었을 때는 기존의 강간통념척도와 관련된 항목에서 준강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통계상 유의미하게 성폭력피해통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 '키스나 애무 허용은 성관계 허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은 네 책임' 등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통념을 준강간 피해자들이 높게 경험하였고, '성폭력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피해자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통념의 경험이 높았다. 즉 평소 피해자 비난과 관련되어서 집중적인 피해를 받는 경험을 준강간피해자가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통념의 핵심을 이루는 행위인 삽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낳은 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한 것'이라는 부분 하나로서 삽입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런 오해를 경험했다는 통념을 오히려 적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피해특성(준강간여부, 성기질내삽입여부)별 통념 경험

		준강간여부			성기질내삽입여부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성욕통제 못한 실수	그렇다	52(33.5%)	26(46.4%)	2.929	45(41.7%)	30(32.3%)	1.891
네가 저항 안 해서	그렇다	50(32.3%)	15(26.8%)	.578	39(36.1%)	24(25.8%)	2.466
네가 유혹	그렇다	34(22.1%)	22(39.3%)	6.218*	32(29.9%)	20(21.5%)	1.825
키스애무허용때문	그렇다	30(19.4%)	19(33.9%)	4.900*	24(22.2%)	24(25.8%)	.353
모텔간 것은 성관계 허용	그렇다	45(29.0%)	24(42.9%)	3.573	38(35.2%)	29(31.2%)	.360
술취한 것너도 책임	그렇다	36(23.2%)	30(53.6%)	17.623***	35(32.4%)	28(30.1%)	.123
만만해 보여서	그렇다	71(45.8%)	32(57.1%)	2.116	49(45.4%)	50(53.8%)	1.408
너도 즐겼을 것	그렇다	32(20.6%)	13(23.2%)	.162	25(23.1%)	19(20.4%)	.216
성관계 난잡해서	그렇다	21(13.5%)	16(28.6%)	6.420*	18(16.7%)	17(18.3%)	.090

		준강간여부			성기질내삽입여부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피해를 확대	그렇다	56(36.1%)	23(41.1%)	.429	47(43.5%)	29(31.2%)	3.234
가해자 진심 오해	그렇다	34(21.9%)	11(19.6%)	.129	35(32.4%)	9(9.7%)	15.099***
보복심에 거짓 신고	그렇다	15(9.7%)	9(16.1%)	1.668	13(12.0%)	10(10.8%)	.081
더럽혀진 몸	그렇다	44(28.4%)	14(25.0%)	.237	29(26.9%)	25(26.9%)	.000
평생씻을수없는상처	그렇다	77(49.7%)	25(44.6%)	.418	50(46.3%)	47(50.5%)	.360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	그렇다	77(49.7%)	24(42.9%)	.767	50(46.3%)	48(51.6%)	.565
인생 망친 것	그렇다	38(24.5%)	16(28.6%)	.355	29(26.9%)	23(24.7%)	.117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그렇다	38(24.5%)	16(28.6%)	.355	26(24.1%)	26(28.0%)	.393
삽입의 강간이 가장 심각한 피해	그렇다	54(34.8%)	24(42.9%)	1.135	42(38.9%)	34(36.6%)	.115
피해사실알리면불리	그렇다	94(60.6%)	34(60.7%)	.000	63(58.3%)	58(62.4%)	.339
피해 공개는 부끄러운 일	그렇다	82(52.9%)	30(53.6%)	.007	58(53.7%)	51(54.8%)	.026
전체		155(73.3%)	56(26.7%)		108(53.7%)	93(46.3%)	

* p< .05, ** p < .01, *** p < .001

3) 강간통념과 적극적 피해통념의 상관관계

통념 1부터 12번까지의 문항 중 개인적 기질이 반영될 수 있는 통념 11, 12를 빼고 기존의 강간통념과 새로 설정한 피해통념 항목 중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의 치명성과 피해자의 가치를 부인하는 항목인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망친 것',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연애나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표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정상관관계를 보여 강간통념을 많이 한 피해자는 적극적 피해통념의 경험도 높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강간통념(통념 1부터 10까지의 통합)과 피해통념과의 상관관계

	14	15	16	17	18	강간통념
14_더러움	1					
15_평생	.439**	1				
16_수치심	.308**	.472**	1			
17_인생망침	.514**	.385**	.354**	1		
18_연애결혼	.477**	.355**	.304**	.512**	1	
강간통념	.354**	.139*	.181**	.295**	.233**	1

* p< .05, ** p < .01, *** p < .001

4) 원망의 대상과 내용

〈표 5〉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 혹은 기관 빈도

		N	퍼센트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	없다(가해자 외)	10	3.7%
	엄마	64	24.0%
	아빠	31	11.6%
	다른가족	17	6.4%
	친구, 학교선후배	28	10.5%
	직장상사 혹은 동료	19	7.1%
	애인	8	3.0%
	교사, 교수	9	3.4%
	종교인	8	3.0%
	경찰등공공기관	27	10.1%
	민간법률기관	6	2.2%
	상담소	6	2.2%
	병원등진료기관	1	.4%
	가해자측주변인(변호사, 가족)	7	2.6%
	세상, 인터넷, 불특정다수	2	.7%
	나	10	3.7%
	가해자	14	5.2%
합계		267	100.0%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원망하는 사람 혹은 기관(〈표 5〉)을 보면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엄마(24.0%), 아빠(11.6%), 다른 가족(6.4%)이 42%를 구성해 가까운 가족의 반응이나 태도에 가장 원망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 친한 학교, 선후배(10.5%), 직장 상사 혹은 동료(7.1%), 애인(3.0%)까지 합치면 60%를 넘어 주변의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원망스럽고 서운한 일이 형성되는 성폭력 경험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관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곳은 경찰 등의 공공 기관으로서 10.1%이다.

원망내용(〈표 6〉)을 살펴보면 '피해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축소'(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경험을 말하지 못하게'(3.07), '피해에 대해 그만 생각하고, 그만 말하라'(2.93)이다. 또 높게 나온 것은 '요구하는 것 무시'(3.06)이다. 대체로 피해를 말하고 대변하는데 피해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원망의 감정이 생긴다는 결과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음'은 2.71, '망가진 존재'는 2.51이 나왔다.

〈표 6〉 원망내용(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내가 피해를 당해 자신들까지 잘못돼 버렸다고 말했다.	2.49	1.233
내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72	1.320
내가 뭔가 망가진 존재이며, 예전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	2.51	1.197
나와 이야기하기를 피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2.71	1.277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했다.	3.06	1.300
피해에 대해 그만 생각하고, 그만 말하라고 말했다.	2.93	1.327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	3.07	1.327
내가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했다.	2.98	1.269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 뭔가를 실행하거나, 결정했다.	2.85	1.298
주변사람들에게 내 허락 없이 나의 피해사실을 말했다.	2.41	1.217
나의 피해 경험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축소해버렸다.	3.34	1.330

5) 피해통념과 원망내용과의 상관관계

피해통념에서 낙인적 규정이 강한 통념과 원망내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7〉). 가장 동의율이 높았던 '피해경험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축소'를 경험한 피해자는 '성폭력은 평생 상처', '인생망친 것', '더럽혀진 것'과 유의미하게 높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피해경험을 말하지 못하게'의 경우 '더럽혀진 것', '인생망친 것'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의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망가진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는 것은 피해통념과 내용적 의미가 비슷한 항목으로서 관심이 가는데, 이 항목은 '성폭력은 평생 상처', '인생망친 것이다', '연애나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등 세 가지 항목과 모두 유의미하게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내가 피해를 당해 자신들까지 잘못돼 버림'은 '연애나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과만 유의미한 정상관계를 보였다.

〈표 7〉 피해통념과 원망내용과의 상관관계

	통념14_더러움	통념15_평생	통념17_인생망침	통념18_연애결혼
자신들까지 잘못	.007	.081	.067	.161*
신뢰 가지 않음	.124	.140	.121	.116
망가진 존재	.141	.244**	.218**	.301**
나를 피함	.060	.184*	.192*	.139
요구 무시	.011	.121	.183*	.054
피해 그만 말함	.097	.166*	.116	.021
말 못하는 분위기	.167*	.042	.151*	.033
문제 해결 방해	.121	.090	.171*	.114
고소 종용 공론화	.065	.147*	.065	.150*
사람들에게 알림	.174*	.288**	.190*	.263**
피해 축소	.167*	.222**	.177*	.038

* p〈 .05, ** p 〈 .01, *** p 〈 .001

6)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특수성 인식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다른 범죄와 차이가 있다고 한 비율은 80.4%(차이있다: 182명/차이없다: 43명)로서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8〉). 차이를 낳은 이유로서 동의율이 가장 높은 것은,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워서'(3.86),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서'(3.86), '성병이나 임신가능성'(3.61)이다. 8개 문항 중 7개 문항이 평균 3점이 넘었고 '평생 꼬리표'(3.43), '인생을 평생 망치는 것'(3.27), '결혼, 연애 등에 문제가'(3.27)도 높게 나왔다. '순결을 잃게 되기에'는 2.75라는 낮은 동의율이 나왔다. 가장 동의율이 낮은 것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서'로 2.06이다.

〈표 8〉 차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의 차이에 대한 동의 정도
(5점 척도, N=182)

	평균	표준편차
결혼, 연애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3.27	1.249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6	1.045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워서	3.86	1.138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3.86	1.118
성병이나 임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3.61	1.055
순결을 잃게 되기 때문에	2.75	1.304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아서	3.43	1.276
피해자 인생을 평생 망치는 것이어서	3.27	1.244

〈표 9〉에는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을 피해유형이나 피해방식(준강간여부 혹은 삽입여부)을 놓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모아 놓았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책임이 있기 때문에'라는 항목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낮게 동의했다.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서'는 비면식이 그 차이를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낮게 인정했다. 반면 공동체피해자들은 다른 피해

유형보다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항목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결혼, 연애 등의 문제'에서는 삽입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삽입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표 9〉 피해유형별 차이 내용 동의 정도

차이문항	피해유형, 방식			평균	표준편차	t 값
피해자책임	친족	아님	132	2.12	1.070	2.083*
		해당	44	1.75	.866	
증명곤란	비면식	아님	158	3.93	1.089	2.311*
		해당	21	3.33	1.278	
증명곤란	공동체	아님	134	3.72	1.133	-2.855*
		해당	45	4.27	1.009	
결혼	삽입	아님	90	3.00	1.272	-2.965*
		해당	79	3.57	1.216	

* p〈 .05, ** p 〈 .01, *** p 〈 .001

6.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에 피해에 대한 통념항목을 첨가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2차 피해적인 의미는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논의할 수 있다.

1) 기존의 강간통념척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결주의, 혹은 상품적 가치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치평가와 피해에 대한 일방적이면서 과도한 판단을 담긴 성폭력 피해통념경험을 피해자들이 대체로 높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63.7%)와

‘공개는 부끄러운 일’(53.6%),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48.6%),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47.7%) 등과 같은 성폭력 피해통념의 경험비율이 높았다. 기존의 강간통념경험에 포함되어왔던 피해자 비난이나 피해불인정에 대한 경험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게 경험을 지각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는 부끄러운 것이며 치명적이고 극복이 어려운 피해로 규정해온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 일반적인 태도를 피해자 개인들도 주변반응을 통해 자주 느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통념경험과 기존의 강간통념과의 정상관관계도 높았다. 강간통념의 경험이 높은 경우 피해통념경험도 동시에 높게 경험하였다는 것은 피해통념경험이 강간통념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같이 경험하는 통념임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통념경험은 2차 피해적 경험을 표현하는 원망과도 정상관관계가 높았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인생 망친 것’ 등의 피해통념 경험은 ‘피해경험을 대수롭지 않을 일로 축소’, ‘피해를 그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거나, ‘나와 이야기하기를 피하거나’ 등의 2차 피해적인 요소가 뚜렷한 원망 경험과 정상관관계에 있었다. 피해자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피해에 대한 낙인적 경험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피해통념경험이 2차 피해로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다른 범죄경험과 다르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사건 이전부터 가져왔던 본인의 가치관이든 아니면 사건을 거치면서 깨닫거나, 주변사람들의 반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든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아서’나 ‘인생을 평생 망치는 것’ 등에서 3점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의 낙인적 평가를 피해자 자신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성폭력 피해 통념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그런 평가를 경험하여 내면화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배경

에는 이런 규정이 성폭력 피해가 과중함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적극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다. 순결을 잃게 되기에'(2.75)는 2점대의 낮은 동의율을 보였는데 순결적 가치관은 위의 꼬리표나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잘못 규정된 것이라는 판단이 높아 더 낮게 나온 것 같다.

2) 강간통념은 강간이라는 특정의 범죄행위가 가지는 중요성에 기반을 두어서 발전했고 강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성기 등의 삽입이다. 그러나 강간통념과 적극적 피해통념 20개 항목을 삽입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해봤는데 통념의 경험지각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삽입강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념에 대한 경험을 삽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존의 강간통념척도에 포함되었던 영역인 피해자 비난이나 원인제공에 대한 비난, 피해에 대한 불인정항목 등에서 삽입이 일어나지 않아도 비슷한 정도로 경험을 지각한다는 것은 강간통념으로 계속 명칭화하거나 이를 중심으로 개념이 발전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일하게 확인되는 차이는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항목으로 오히려 삽입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삽입경험이 없는 피해자보다 경험지각률이 떨어진다.

한편 성폭력이 다른 범죄와 왜 차이가 나는가를 응답한 항목에서는 삽입중심의 피해의식을 증명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혼 연애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성폭력이 다른 범죄와 다르다는 항목에서 비삽입: 3.00/삽입: 3.57로 삽입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동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원에서 높게 나왔다. 피해 통념 경험지각문항에서는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는 비삽입: 24.1%/삽입: 28.%로 경험지각을 삽입피해자가 조금 높게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주변에 의한 명시적 경험보다는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삽

입피해경험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피해유형별로 봤을 때는 '인생망친 것'이라는 낙인적인 규정의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친족피해자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비면식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낮게 경험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과 같은 통념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장 높게 한 것으로 나와 인생이나 삶의 가치, 자격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험을 많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도 비면식 피해자가 가장 낮게 경험했다. 또한 공동체와 데이트 성폭력피해자들은 유형별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너에게도 책임이'와 '남자에게 만만하게 보여서'라는 항목에서 다른 피해유형인 친족, 비면식보다 훨씬 높은 비율도 경험지각을 한 것으로 나왔다. 비면식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고, 친족성폭력도 아빠 등 남자 친족이 아동에게 많이 저지르는 형태라 피해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반면, 공동체나 데이트 성폭력 같이 주로 성인여성이 아는 관계의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피해자 비난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피해자 비난이 높은 것은 피해방식에서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후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준강간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방식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준강간 경험 그룹에서도 높게 나왔다. '성폭력을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 등의 피해자 책임을 많이 묻는 문항에서 준강간피해자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상담일지 상에서도 술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자비난의 요소로서 자주 등장한다.

즉 강간통념에서 중요하게 문제 삼는 피해자 비난과 이를 계기로 한 자기비난은 피해유형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 데이트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방식으로는 준강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많이 경험했다. 이런 피해자 비

난항목은 비면식 피해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장 낮게 나오는데, 이는 강간통념의 중요한 축인 피해자 비난이 삽입여부의 기준보다는 가해자와의 관계성, 술 등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됨을 확인하게 한다.

3) 기존의 강간통념 척도항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피해자비난항목에 새로 투입한 통념인데 높은 경험지각비율은 보인 항목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49.1% 경험)이다. 이 논리는 야한 옷차림을 비난하는 논리보다도 훨씬 포괄적이다.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허술해 보이거나 얕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아, 많이 웃었다는 것인지, 부적절한 말대답을 했다는 것인지, 술에 취해 보였다는 것인지, 신체적으로 약해 보였다는 것인지 등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특정할 수 없게 광범위하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경험지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논리가 그대로 피해자 비난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성폭력과 관련한 여성비난이 어떤 것도 가져다 붙이면 이유가 되는 수준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36.7% 경험)라는 통념도 중요하다. 특정의 성폭력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를 사실상 불인정하는 논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족, 공동체나 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과 같이 아는 사람이나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40% 이상 겪었다는 것은 주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험도 많이 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4) 원망의 대상은 가족이 42%이고 친한 학교, 선후배(10.5%), 직장 상사 혹은 동료(7.1%), 애인(3.0%)을 합치면 60%가 넘는데, 경찰은 기관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10.1%에 그쳐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의 반응이 작은 요소가 아님을 확인하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2차 피해에서 주변의 반

응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울만이나 와스코 등의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7.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접근이 쉽지 않는 성폭력피해자를 설문조사하여 피해통념이나 원망 등에 대한 경험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없기에 피해 유형별 수를 조정할 수 없어 유형별 숫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유형별 30명 이상의 기본 숫자는 확보하여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망의 대상을 정한 다음 원망내용을 정하게 되어있어 자신이 겪는 주변사람과 기관 모두를 포괄하는 원망내용이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통념 연구관련 세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는 피해통념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진영은 성폭력 피해의 가혹함, 치명적인 상처 등을 강조해왔다.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당성을 얻어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미국 등에서도 강간통념에 강간의 피해를 사소화하는 항목이 들어있을 만큼 사소화하는 것만이 문제이지 피해를 강조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믿어져왔다.

그러나 이 방향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 피해자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변의 반응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다. 오히려 트라우마적 피해를 갖지 않거나 잘 극복한 성폭력 피해자의 삶과 경험을 왜곡하기 쉽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 검찰, 판사 혹은 주변 사람이 피해자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특정의 상을 가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삶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성폭력에서 중요한 피해인 2차 피해를 고민하면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통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유발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된 관념은 각 사회의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운동의 진행방향과의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특성이 반영되는 성폭력 통념을 계속 고민하고 점검하며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용어사용도 달리하고 내용성도 다르게 갖추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강간통념이란 용어와 그 척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강간통념이란 용어는 특정상황의 성폭력만 대변할 뿐만 아니라 삽입중심적인 사고를 깔고 있다. 실제 이 연구에서는 통념경험연구에서 삽입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가 어려움을 일정하게 밝혔는데,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진영의 강간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이 학계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2차 피해의 영역을 확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직은 형사법기관 관계자나 상담기관 의료기관등의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서의 2차 피해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2차 피해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통념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반응이 피해형성에 미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원망대상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훨씬 높게 나왔고, 관계성이 강한 피해 경험인 공동체,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비난경험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2차 피해의 영역을 확대하는 연구는 성폭력 피해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공춘옥 · 김봉환(2014),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4호, 409-431쪽.

권혜수(2007), “성폭력 피해여성의 치유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분과』, 제13권 4호, 34-66쪽.

김미리혜(2011), “성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정신건강정책포럼』, 제12권, 39-57쪽.

김민정(2015),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 연구』, 제23권 3호, 173-200쪽.

김재엽 · 최지현(2009),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제30권 2호, 231-247쪽.

박경(2008), “과잉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2호, 519-536쪽.

신기숙(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0권 4호, 1255-1287쪽.

이명신(2014),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제7권 1호, 43-98쪽.

_____ · 양난미(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과정: 남성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3권 2호, 149-197쪽.

_____ · 양난미 · 김점희 · 문유정(2015),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8권 1호, 43-85쪽.

이미경(2007), “반(反)성폭력 법제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성폭력, 법정에 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서울: 푸른사상, 19-48쪽.

_____(2011),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석재(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2호, 131-148쪽.

_____ · 최상진(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 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1호, 97-116쪽.

여성가족부(2014),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장미정 · 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제2호, 129-137쪽.

정국(2012), 『섹슈얼 트라우마』, 서울: 블루닷.

정현미(2000),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권, 162-200쪽.

최인숙 · 김정인(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 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0권 3호, 277-300쪽.

허선주 · 조은경(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1호, 381-414쪽.

Andrews, B., C. R. Brewin, and S. Rose(2003), “Gender, Social Support, and PTSD in Victims of Violent Crim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 pp. 421-427.

Aosved, A. C. and P. J. Long(2006), “Co-occurrence of Rape Myth Acceptance, Sexism, Racism, Homophobia, Ageism, Classism, and Religious Intolerance”, *Sex Roles*, 55, pp. 481-492.

Baugher, S. N., J. D. Elhai, and J. R. Monroe et al.(2015), “Rape Myth

Acceptance, Sexual Trauma History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11), pp. 2036-2053.

Burt, M. R.(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pp. 217-230.

Campbell, R. and S. Raja(2005),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Help-Seeking Experience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pp. 97-106.

_____, E. Dworkin, and G. Cabral(2009), "An Ecological Model of the Impact of Sexual Assault on Women's Mental Health", *Trauma, Violence, and Abuse*, 10, pp. 225-246.

Colleen, W.(1988), "The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cale: Construction, Validation, and Cross Cultural Applic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2), pp. 127-146.

Correia, I., J. Vala, and P. Aguiar(2007), "Victim's Innocence,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Threat to the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pp. 31-38.

Kopper, B. A.(1996), "Gender, Gender Identity, Rape Myth Acceptance, and Time of Initial Resistance on the Perception of Acquaintance Rape Blame and Avoidability", *Sex Roles*, 34(1/2), pp. 81-93.

Krienert, J. L. and J. A. Walsh(2011), "Sibling Sexual Abuse: An Empirical Analysis of Offender, Victim and Event Characteristics in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Data 2000-2007",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0(4), pp. 353-372.

Lonsway K. A. and L. F. Fitzgerald(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pp. 133-184.

Moor, A.(2007), "When Recounting the Traumatic Memories is Not Enough:

Treating Persistent Self-Devaluation Associated with Rape and Victim-Blaming Rape Myths", *Women and Therapy*, 30(1/2), pp. 19-33

Payne, D. L., K. A. Lonsway, and L. F. Fitzgerald(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pp. 27-68

Peterson, Z. D. and C. L. Muehlenhard(2004), "Was It Rape? The Function of Women's Rape Myth Acceptance and Definitions of Sex in Labeling Their Own Experiences", *Sex Roles*, 51, pp. 129-144.

Renck B. and P. G. Svensson(1997), "The Reactions of Women Who Have Been Assaulted and Their Efforts to Gain Redress",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 pp. 44–53.

Ullman, S. E.(2010), *Talking about Sexual Assault: Society's Response to Survivo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_____, and H. H. Filipas(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la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pp. 369-389.

_____, _____, S. M. Townsend, and L. L. Starzynski(2006), "The Role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in Women's Sexual Assault Experi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pp. 798-819.

Vonderhaar, R. L. and D. C. Carmody(2015), "There Are No "Innocent Victims": The Influence of Just World Beliefs and Prior Victimization on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0), pp. 1615-1632.

Wasco, S. M.(2003), "Conceptualizing the Harm Done by Rape: Application of Trauma Theory to Experiences of Sexual Assault", *Trauma, Violence and Abuse*, 4(4), pp. 309-322.

〈인터넷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2016), “개념과 대응”, http://www.sisters.or.kr(검색일: 2016.2.15).

(논문 투고일: 2016.04.30, 심사 확정일: 2016.12.03, 게재 확정일: 2016.12.12)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Victimization Myths on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Kwon, Insook* · Lee, Gunjeong · Kim, Sunyo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overcoming sexual victimization myths when protecting and heal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eating victim-supportive social awareness and forming a culture that is conducive to sexual violence prevention. I conducted a survey with 235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2014.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a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along with a correlation analysis were util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d high victimization myths as well as rape myth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myths and the negative blame to family, relatives and community institutes was significant. Also, penetration, the major factor in rape myths, occurred or not, did not make much difference in experiencing rape myths or victimization myth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new persepctives on rape myths.

Key words: rape myth, victimization myth, sexual violence myth, secondary victimization, victims

* Lead author, Professor, Bangmo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Hilo)